



# 보도자료

2020. 6. 1.(월) 배포



##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◆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
- ◆ 도서·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6월 2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 - 2019년 12월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교원지위법)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,
    -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·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·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.

<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(공포 '19.12.10., 시행 '20.6.11.) >

**제15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) ③** .....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8조의2(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) ②**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.

**<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>**

- △ 상해·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
- △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- △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·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
- △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

-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**<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 등 >**

- △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
- △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
- △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

- 또한,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.
-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,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【붙임】 교원지위법 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

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2조의3(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) 법 제1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형법」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</u></li> <li><u>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</u></li> <li><u>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 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</u></li> </ol>

제2조의3 (생략)

제9조(교육연구비용의 지원) ①

관할청은 교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)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

제2조의4 (현행 제2조의3과 같음)

제9조(교육연구비용의 지원) ①

----- 「고등교육법」  
제2조에 따른 학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)

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원(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, 방법창,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
2.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
3.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 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
4. 교원의 성별 현황
5.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
실태조사는 서면조사, 현장조사  
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  
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  
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18  
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 
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 
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